

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4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8. 24

고성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8. 24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0. 9. 4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함에 개정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량 관리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가.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·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
수립(안 제3조)

나.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사항 의무화

(안 제6조 및 제7조)

다. 간이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과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수립(안 제9조 및 제10조)

라. 간이상수도시설 폐지사유 발생시 협의회 의견수렴하여 폐지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)

마. 사용자로부터 간이상수도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바.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·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2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2,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m³이상 500m³미만인 간이상수도와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m³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과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
-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의2에 동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, 환경부의 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하여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회부되었는바
- 상위법 저촉여부 등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동조례 개정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- 다만, 전반적인 자구수정과 동 조례안 제12조(건강진단) 부문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대한 건강진단 대상자의 범위, 실시시기 등의 명시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
- 또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신속한 공급 대책(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등) 체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제20조 관리자의 교육을 어떤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?
- 답 : 먹는 물의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, 급수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임.
- 문 : 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신속한 공급대책은?
- 답 : 안 제13조에서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해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6. 토 론

- 안 제5조(취수원의 보호등) 제2항중 “자물쇠 장치”를 “잠금장치”로 한다.
- 안 제11조(시설의 폐지) 제2항중 “기록하여 보관하고”를 “기록하여 관리하고”로 한다.
- 안 제13조(관리비용)의 단서중 “예산범위 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로 한다.
- 안 제15조(계량기) 제2항중 “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.”를 “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”로 한다.
- 안 제21조(관리의 위탁) 제2항중 “민간위탁” 앞에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삽입한다.
- 안 제22조 제목 “(규칙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하고, 동조중 “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“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※ 붙임 :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7. 심사결과

- 2000. 9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

의안번호	제 641 호	
의결년월일	2000. 9. . (제 80 회)	의 결 사 항

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제 안 자	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제안년월일	2000. 9. 4.

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 안 번 호	6 4 1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0. 9. 4.

제 안 자 :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사유

-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용어의 간결화와 자구의 수정을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5조 제2항중 “자물쇠 장치”를 “잠금장치”로 한다.
- 안 제11조 제2항중 “기록하여 보관하고”를 “기록하여 관리하고”로 한다.
- 안 제13조 단서중 “예산범위 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로 한다.
- 안 제15조 제2항중 “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.”를 “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”로 한다.
- 안 제21조 제2항중 “민간위탁” 앞에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삽입 한다.
- 안 제22조 제목 “(규칙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하고, 동조중 “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“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3. 불 임 : 수정안 본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3조제1항중 “자물쇠 장치”를 “잠금장치”로 한다.

안제11조제2항중 “기록하여 보관하고”를 “기록하여 관리하고”로 한다.

안제13조 단서중 “예산범위 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로 한다.

안제15조 제2항중 “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.”를 “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”로 한다.

안제21조제2항중 “민간위탁” 앞에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삽입한다.

안제22조 제목 “(규칙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하고, 동조중 “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“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5조(취수원의 보호 등) ①(생략)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<u>자물쇠 장치</u>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취수원의 보호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점금장치</u> -----</p>
<p>제11조(시설의 폐지) ①(생략) ②군수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시설의 폐지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기록하여 관리하고</u> -----</p>
<p>제13조(관리비용)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관리비용) -----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-----</p>
<p>제15조(계량기) ①(생략)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.</p>	<p>제15조(계량기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</u></p>
<p>제21조(관리의 위탁) ①(생략)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, 위탁기간,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,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1조(관리의 위탁) 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, 위탁기간,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,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22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2조(시행규칙) ----- <u>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